

의안번호	2217168
의 퇴 인	김원이 의원
회 답 일	2026. 4. 20.
추계번호	26A1203

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3조(업무)	○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(제1항) - 3. 제5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 보험·보증 연계 투자 - 4. 제5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 팩토링	의무규정
2	안 제53조의5(중소·중견기업 보험·보증연계 투자)	○ 공사는 보험·보증관계가 성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음(제1항) - 1. 주식의 인수 - 2. 전환사채의 인수 - 3.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- 4. 교환사채의 인수 - 5. 「상법」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-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방식	재량규정
3	안 제53조의6(중소·중견기업 팩토링 운용)	○ 공사는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(이하 “중소기업자등”)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등이 보유한 대외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등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대외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(이하 “중소·중견기업 팩토링”이라 한다)를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53조(업무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3조의5(중소·중견기업 보험·보증연계 투자)	
3	안 제53조의6(중소·중견기업 팩토링 운용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이 신규로 규정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(이하 공사)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(안 제53조제1항제3호·제4호 등)
 - － “중소·중견기업 보험·보증 연계 투자”는 공사와 보험·보증관계가 성립한 중소·중견 기업에 대하여 공사가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는 것을 말함(안 제53조의5)
 - － “중소·중견기업 팩토링”은 공사가 중소기업자등이 보유한 대외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대외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말함(안 제53조의6)
- 다만, 개정안은 신규 업무의 운용 규모를 하위법령 등에 위임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중소·중견기업 보험·보증 연계 투자의 경우 개정안은 그 한도를 무역보험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(안 제53조의5제2항), 중소·중견기업 팩토링의 경우 운용 규모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(안 제53조의6제2항)
 - 참고로, 무역보험기금의 2026년 기금운용규모는 5조 7,730억원이며, 정부로부터의 전입금은 705억원 수준임

[표 1] 무역보험기금 수입·지출 현황(2026년)

(단위: 억원)

구분	수입	구분	지출
자체수입	15,476	사업비	4,880
정부내부수입	705	기금운영비	1,259
여유자금회수	41,550	여유자금운용	51,591
합 계	57,730	합 계	57,730

자료: 산업통상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